

창원지방법원 2023. 12. 8 선고 2023나100586 판결 [보증채무금]

재판경과

창원지방법원 2023. 12. 8 선고 2023나100586 판결

창원지방법원 2022. 12. 13 선고 2021재가단47 판결

전문

원고(재심피고), 피항소인

주식회사 A

피고(재심원고), 항소인

주식회사 C

변론종결 2023. 10. 20.

판결선고 2023. 12. 8.

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22. 12. 13. 선고 2021재가단47 판결

주문

1. 피고(재심원고)의 항소를 기각한다.
2. 항소비용은 피고(재심원고)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

1. 청구취지

피고(재심원고, 이하 '피고'라 한다)는 D과 연대하여 원고(재심피고, 이하 '원고'라 한다)에게 14,000,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. 7. 11.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
2. 재심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제1심판결을 취소한다. 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.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,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더라도,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.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,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2. 결론

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.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,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재판장 판사 김구년, 판사 정수미, 판사 강 웅